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이병현 소유물건(2025타경64774)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민

감정평가서번호: KB251120-02-1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국토 경기북부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최재규

최재규



(주)감정평가법인 국토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곽동은

(서명도는인)



감정평가액	일억구천삼백만원정 (₩193,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민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병현 (2025타경6477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1.21	2025.11.20 ~ 2025.11.21	2025.11.27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93,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93,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이석권		(인)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운정팰리스 102동 제2층 제202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목적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대상물건 전경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16)
건물명 및 층·호수	(통칭) 운정팰리스 102동 제2층 제202호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사용승인일자	2017.01.20
주 용 도	공동주택

기호	해당 동/층/호수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가	102/2/202	56.74	10.448	67.188	84.4	67.4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출처 :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1월 21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에 대하여 2025년 11월 20일 ~ 2025년 11월 21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및 면적 등은 귀 원이 제시한 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괄평가가 원칙으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적정하지 않으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해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내부구조도를 작성하였으며,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p>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p>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p>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p>	<p>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p>
--------------------------------------	--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가. 본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 나.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A	야당동 57-***	정우팰리스 302/3/3**	57.37	2025.06.20	200,000,000	3,490,000
				2018.03.20		
B	야당동 57-***	정우팰리스 301/2/2**	57.37	2024.12.26	227,000,000	3,960,000
				2018.03.20		
C	야당동 57-*	103/3/3**	60.04	2025.04.13	180,000,000	3,000,000
				2017.06.16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목적	기준시점	평가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D	야당동 61-*	101/2/2**	56.74	법원 경매	2025.06.17	212,000,000	3,740,000
					2017.01.20		
E	야당동 62-***	102/3/3**	58.18	법원 경매	2025.07.09	195,000,000	3,350,000
					2018.04.17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유형	부동산 가치수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약 3,000,000원/㎡ ~ 4,000,000원/㎡ 내외 (단지위치, 층, 호별, 전유면적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가격수준 다소 차이 있음)

라. 경매 낙찰가율

지역 / 기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024년 12월 ~ 2025년 11월 (1년 평균)			
구 분	파주시		야당동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건수
다세대	56.92	223	66.66	102

[출처 : 태인경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사례의 선정

최근 거래된 사례 중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전유 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대상 물건
				사용승인일			
A	야당동 57-18	정우펠리스 302/3/301	57.37	2025.06.20	200,000,000	3,490,000	가
				2018.03.20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사례로 선정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이를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치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상기 선정한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1.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1) 개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 산정하되, 기준시점의 매매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2)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 본건 기호 가 / 사례 기호 A

구 분	2025년 05월	2025년 10월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경기 경의권)	99.8	99.2

※거래시점 : 거래시점(2025.06.20)의 직전 월인 2025년 05월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시점 : 기준시점(2025.11.21)의 직전 월인 2025년 10월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3) 시점수정치 산정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산정기간)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가	A	경기 경의권 2025.06.20 ~ 2025.11.21	99.2 / 99.8	0.99399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분건물 [본건 기호 가 / 사례 기호 A]

조 건	세부항목	격차율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와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0.98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등에서 열세합니다.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0.980	1.00×0.98×1.00×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대상부동산 적용단가

기호	거래사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가	3,490,000	1.000	0.99399	0.980	3,399,645	3,400,000

2) 대상부동산 시산가액

기호	동/층/호	전유면적 (㎡)	적용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102/2/202	56.74	3,400,000	192,916,000	193,000,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통칭)운정팰리스 102동 제2층 제202호	56.74	67.4	193,000,000	-
합 계		193,000,000				

끝.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102동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16			1층	76.33			
				2층	133.07			
				3층	133.07			
				4층	133.07			
	동소	61-1	대	계획관리지역 (내)	1,011.0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2호	56.74	56.74	193,000,000	비준가액
				1 소유권대지권	67.4 1,011x— 1,011	67.4		
	합 계			이 하	여	백	배분내역 토 지 : 77,200,000 건 물 : 115,800,000 ₩193,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역(운정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제2층 제202호로서(사용승인일: 2017.01.20)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공부 및 현황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급탕설비, 승강기설비(기준시점 현재 운행 중단된 상태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준주거 Zone), 소로2류(폭 8m~10m)(2025-08-27)(소로2-운정2)(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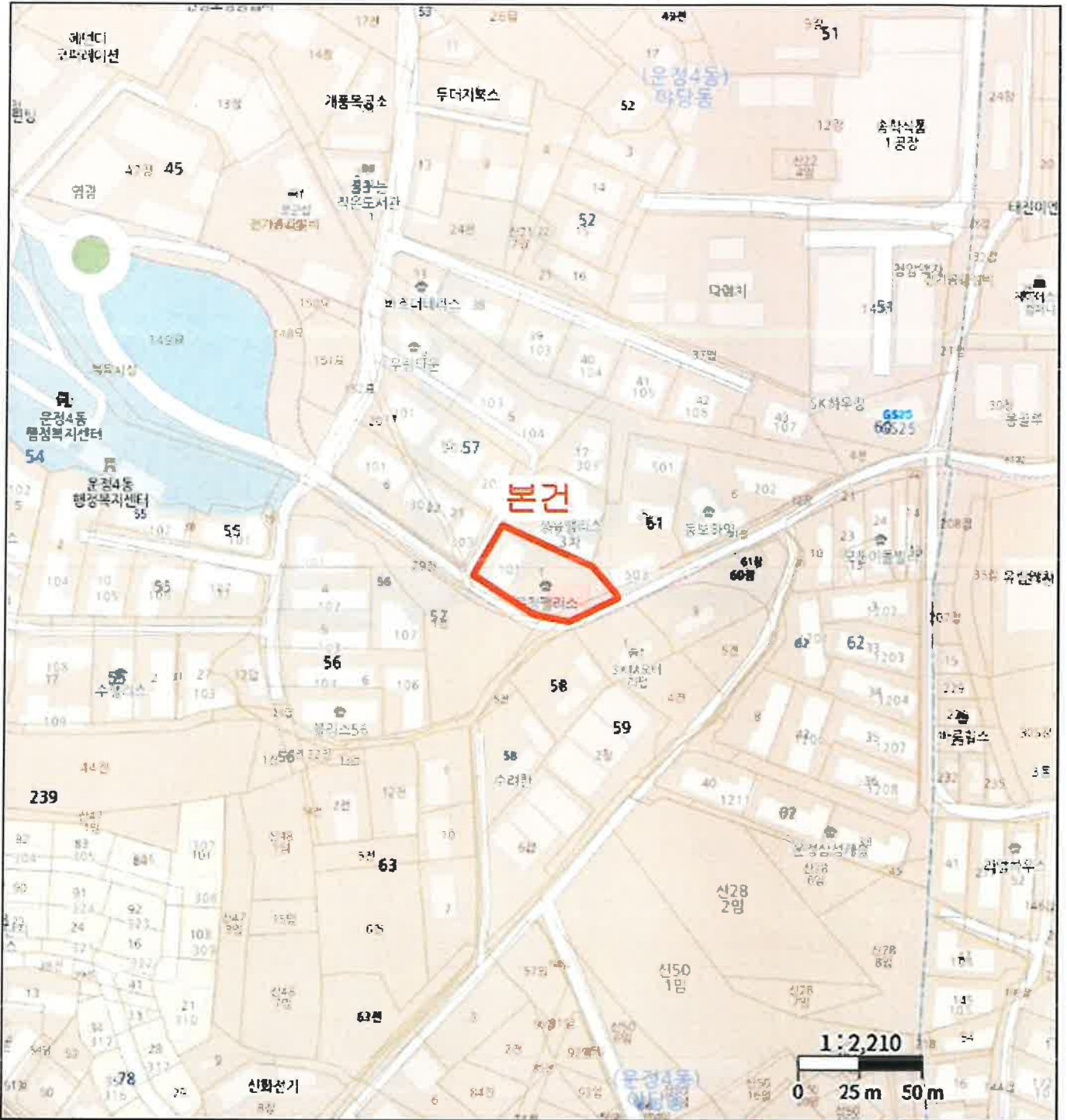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102동 제2층 제202호
-----	---------------------------------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102동 제2층 제202호
-----	---------------------------------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102동 제2층 제202호
-----	---------------------------------

No Scale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102동 제2층 제202호]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공동출입문

사 진 용 지



현관



본건 및 주위환경